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14.6.23.] [국토교통부령 제102호, 2014.6.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욕실 등에서의 미끄럼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욕실, 화장실 등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 마감재료가 도자기질 타일인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의 도자기질 타일에 관한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02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규제의 존속기한) 제24조제6항은 2015년 6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끄럼 방지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수선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